

'26년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1

제도 개요

-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E-9, H-2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 법무부는 한국어능력, 나이, 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에게 전환 허용, 다만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은 한시 유예('24.11.27.~'26.12.31.)

- 고용부는 법무부가 할당한 제조업 분야 추천 쿼터(2,000명, '26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제조업은 고용부 추천 쿼터와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2

고용부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 우리부 추천 쿼터(제조업:2,000명) 內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고용부 추천' 사업장 명단 통보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대상 사업장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조선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제외(산업부 추천 대상)

-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2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③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제한 없음

나.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

①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H-2)

* 3년 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우수 안전리더 인증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선 추천

②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 (붙임2)

-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한국어능력 외 점수 요건 충족(150점 이상 득점) 시 최초 2년간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 한시 유예('24.11.27 ~ '26.12.31.)

3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6. 3. 9.(월) ~ '26. 12. 25.(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 (선정 절차) 신청 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2주 이내, 필요시 추천서 발급) → 법무부에 전환 신청*(~12.31.) → 선발 요건 충족 외국인을 전환 대상으로 확정·통보(법무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 (추천 유효기간) 추천일 기준 1년 간 유효

1 선발인원: 33,000명

< 2026년도 K-point E74 쿼터 배정 계획 >

(단위: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제조업	뿌리 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 상선	건설업	제조업		
배정 인원	33,000	12,000	2,000	1,100	900	600	500	200	1,000	8,500	6,200

※ 제도운영 중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 추천 절차 등

- (선발) 외국인이 K-point E74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고용기업도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중앙부처별 자체 기준*에 따라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

* 중앙부처별 세부 추천기준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시행

- (추천 절차)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필요 없음

- 외국인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중앙부처는 자체 양식 활용

- (부처별 추천 영역 및 소관 부서)

구 분	고 용 부	산 업 부	농식품부	산 업 부	해 수 부	국 토 부	중 기 부
추천 영역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상선	건설업	제조업
소관 부서	외국인력 담당관실	산업공급망 정책과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농업 정책과	조선해양 플랜트과	선원정책과	건설산업과	인력정책과

2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6. 3. 1.(일) ~ 12. 31.(목),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시: 1990년생 → 금요일, 1993년생 → 수요일, 1987년생 → 화요일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거주,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별첨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사회통합 요건 특례**(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하되, 중앙부처 추천 우선 반영 예정(중복 추천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대체 추천 안내 예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 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별첨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횡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행정 사항

- 허가 내용: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시행 일자 등

- 시행 일자: '26. 3. 1.(일)
-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 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24. 11. 27.) 적용

별첨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①평균소득 및 ②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26. 12. 31.)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①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table><tr><td>구 분</td><td>2,500 ~ 3,000만</td><td>3,000~ 3,500만</td><td>3,500~ 4,000만</td><td>4,000~ 4,500만</td><td>4,500~ 5,000만</td><td>5,000만~</td></tr><tr><td>배 점</td><td>50</td><td>65</td><td>80</td><td>95</td><td>110</td><td>120</td></tr></table>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②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table><tr><td>구 분</td><td>2급/2단계/41~60점</td><td>3급/3단계/61~80점</td><td>4급/4단계/81점 이상</td></tr><tr><td>배 점</td><td>50</td><td>80</td><td>120</td></tr></table>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③ 나이 : 최대 60점 <table><tr><td>구 분</td><td>19세 ~ 26세</td><td>27세 ~ 33세</td><td>34세 ~ 40세</td><td>41세 ~</td></tr><tr><td>배 점</td><td>40</td><td>60</td><td>30</td><td>10</td></tr></table>			구 분	2,500 ~ 3,000만	3,000~ 3,500만	3,500~ 4,000만	4,000~ 4,500만	4,500~ 5,000만	5,000만~	배 점	50	65	80	95	110	120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구 분	2,500 ~ 3,000만	3,000~ 3,500만	3,500~ 4,000만	4,000~ 4,500만	4,500~ 5,000만	5,000만~																														
	배 점	50	65	80	95	110	120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table><tr><td colspan="3">추천</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r><tr><td colspan="2">①</td><td>②</td><td>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td><td>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td><td>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td><td>국내 운전면허증</td></tr><tr><td>중앙 부처</td><td>광역 지자체</td><td>고용 기업체</td><td></td><td></td><td></td><td></td></tr><tr><td>30</td><td>30</td><td>50</td><td>20</td><td>20</td><td>20</td><td>10</td></tr><tr><td colspan="7">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td></tr></table>			추천			③	④	⑤	⑥	①		②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국내 운전면허증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고용 기업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추천			③	④	⑤	⑥																															
①		②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국내 운전면허증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고용 기업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table><tr><td>감점 항목</td><td>1회</td><td>2회</td><td>3회(이상)</td></tr><tr><td>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td><td>5</td><td>10</td><td>20</td></tr><tr><td>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td><td>5</td><td>10</td><td>15</td></tr><tr><td>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15점)</td><td>5</td><td>10</td><td>15</td></tr></table>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